



제 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 추가 >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5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 추가	3
※ 참고자료	7
1.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현황('24)	7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3450호】

1. 발 의 자 : 윤중군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 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 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 추가

개정안은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 ----- -----.
1. ~ 24. (생략)	1. ~ 24. (현행과 같음)
<u><신설></u>	25.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공중화장실</u>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25개 시설(참고자료 1)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①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 ②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교육 이수, ③ 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 등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현행법 상 다중이용시설 관리방안]

구분	관리자 교육	자가 측정	오염도 검사
근거	법 제7조	법 제12조	법 제13조
주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또는 측정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내용	① 신규교육(1년 이내 1회) ② 보수교육(3년마다 1회)	① 유지기준(1회/년) ② 권고기준(1회/2년)	① 유지기준* 준수 ② 자가측정 이행 및 교육 이수
처분	과태료(5백만원 이하)	과태료(5백만원 이하)	① 과태료(1천만원 이하) ② 개선명령(1년 내)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개정안은 공중화장실¹⁾이 다수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약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과 같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유지기준·권고기준 설정, 측정 및 개선명령 등 관리수단을 설계한 법률이라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는 점에서,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하는 냄새(악취)를 동일한 관리체계로 직접 편입하려는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환풍시설 설치, 청소·소독, 관리인 교육 등 악취 저감과 직접 연계되는 관리수단²⁾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바, 악취 관리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개선근거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우선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의 악취는 발생 양태와 원인물질이 일반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성격이 다르고, 시설별 환기구조가 다양하여 정량적 측정·기준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측정보다 청소·소독·환기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관리가 더 적합하다는 취지의 부정적 의견³⁾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의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2

-
- **(행정안전부)** 건강과 밀접한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공중화장실 악취는 원인이 다르며, 공중화장실법에서 악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실내공기질법 적용 대상 포함 시 관리인 부담 증가,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됨('25.11.3)
 -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시도)** 단시간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중화장실의 주요 악취물질은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다르며, 공중화장실은 이용시간이 짧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환기구조가 다양하여 공기질 측정이 곤란하고, 악취유발물질은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달라 청소·소독 등의 실질적 관리가 더 적합.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화장실협회)** 공중화장실 악취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내공기질법 대상 포함 시 공기질 측정, 권고기준 준수 등 관리 부담이 우려됨('25.11.3)

참고자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현황(2024)

번호	구분	시설군	개소수	규모 기준 (연면적)
1	가. 일반시설	지하역사	694	모든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72	2,000㎡ 이상
3		철도역사 대합실	31	2,000㎡ 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27	2,000㎡ 이상
5		항만시설 대합실	6	5,000㎡ 이상
6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19	1,500㎡ 이상
7		도서관	360	3,000㎡ 이상
8		박물관·미술관	289	3,000㎡ 이상
9		대규모점포	1,250	모든 대규모점포
10		장례식장(지하 한정)	213	1,000㎡ 이상
11		영화상영관	587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12		학원	338	1,000㎡ 이상
13		전시시설(육내 한정)	110	2,000㎡ 이상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711	300㎡ 이상
15		목욕장	828	1,000㎡ 이상
		소계	6,535	
16	나. 민감계층 이용시설	의료기관	3,531	2,000㎡ 이상 / 병상 수 100개 이상
17		산후조리원	403	500㎡ 이상
18		노인요양시설	2,363	1,000㎡ 이상
19		어린이집	5,401	430㎡ 이상
20		실내어린이놀이시설	308	430㎡ 이상
		소계	12,006	
21	다.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7,169	2,000㎡ 이상
22	라. 그 외 기타시설	업무시설	9,448	3,000㎡ 이상
23		두 가지 이상 용도시설	20,166	2,000㎡ 이상
24		실내공연장	50	객석 수 1,000석 이상
25		실내 체육시설	98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소계	29,762	
총계			55,472	